#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90 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:김한규·박정현·김태년

손명수 · 최기상 · 박희승

정진욱 • 양부남 • 강유정

위성곤 • 이건태 • 김영화

진선미 • 민병덕 • 박상혁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

실종아동 가운데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, 현행법이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 보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을 단기간이나마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,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 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보호 중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사실을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함(안 제7조의5제1항 신설).
- 나.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등 자의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와 명칭 등 해당 보호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종아동등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 줄 수 없도록함(안 제7조의5제1항 신설).
- 다.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실종아동등이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해당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5제2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5(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등 보호)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중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그 보호 사실을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, 친족에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자의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, 구체적인 명칭, 전화번호 등 해당 보호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종아동등 본인의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보호시설의 장은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해당 실종아동등이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등 보호에 대하여 반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해당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제7조의5(보호시설에서의   동등 보호) ① 보호시   은 보호 중에 있는 실환   의 보호자가 확인된   보호 사실을 실종아동   호자에게 알려야 한다	
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의한 성폭력, 그 밖에 2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 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사유가 원인이 되어 지 하여 보호자로부터 이 우 보호시설의 위치, - 명칭, 전화번호 등 해당 설을 특정할 수 있는 실종아동등 본인의 동 보호자에게 알려 주어 니 된다. ② 보호시설의 장은 - 등이 보호시설에 있기 는 경우 해당 실종아동 정으로의 복귀가 어려 이 있거나 가정으로 등	설의 장등 경우 다 지점 이 바 지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

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등 보호에 대하여 반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해당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.